



산재 보험 재심사 재결사례

○○실업 소속 목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안구천공, 2) 각막열상 3) 외상성 백내장 4) 수정체 탈구 5) 홍체열상 6) 급성담마진” 이 발생한 경우

(91-75호 91. 3. 25. 기각)

재결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서 ○ ○

주소: 인천시 일신동

원처분 청: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상 동

주소: 상 동

피재근로자 성명: 상 동

주소: 상 동

소속: ○○실업

주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0. 11. 23.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청구인은 ○○실업 소속 목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5. 1.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안구천공, 2) 각막열상, 3) 외상성 백내장, 4) 수정체 탈구, 5) 홍체열상, 6) 급성담마진”으로 김안과의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0. 10. 30. 치료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치료 종결후에 시력이 점점 나빠져 현재는 교정시력이 0.4이고 뒷머리와 눈이 아프고 쑤시며 눈

동자가 위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이므로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2. 12. 서○○)
2. 원처분청 의견서(1991. 2. 18.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0. 11. . 서○○)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0. 11. 23.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5. 심사결정서 사본(1991. 1. 25.)
6.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실업 소속 목공으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5. 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 안구천공, 2) 각막열상, 3) 외상성 백내장, 4) 수

정체탈구, 5) 홍체열상, 6) 급성담마진”으로 김안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0. 10. 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김안과의원 담당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외상성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후 나안 자각시력 우안 0.5(인공 수정체안), 좌안 0.8, 교정 자각시력 우안 $0.8 \times -0.50\text{D}\text{sphg} + 0.25\text{Cyl A } 90\text{도}$, 좌안 $1.0 \times -0.25\text{D}\text{sphg}\text{임}$ ”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우안 외상성 백내장 및 인공수정체 삽입후 우안 나안 자각시력 0.5, 교정 자각시력 0.8”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우안 교정시력이 0.8인 상태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로 인정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중공업(주) 기계보수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우안, 안내이물, 2)우안, 백내장, 3)우안, 초자체 출혈이 발생한 경우

(91-632호 92. 1. 27. 취소)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박 ○ ○

주소: 울산시 남구

원 처 분 청: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류 ○ ○

주소: 울산시 중구

대 리 인 성 명: 박 ○ ○

주소: 울산시 남구

피 재 근 로 자 성 명: 류 ○ ○

주소: 울산시 중구

소속: ○○중공업 주식회사

주 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1. 8. 9.자 “류○○”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3급 적용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8. 9.자 피재근로자 “류○○”(이하 “피재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피재자는 ○○중공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9. 28.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 안내이물, 2) 우안, 백내장, 3) 우안, 초자체 출혈”로 고신의료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7. 24.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피재자의 잔존장애를 “한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으로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3급 1호를 적용 처분하였다.

피재자의 대리인인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피재자의 현재 시력은 0.02 정도로 거의 실명상태이고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및 시야협착 등도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잔존장애가 장해등급 제13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11. 19. 박○○)
2. 답변서(1991. 11. 22. 원처분청)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7. 24. 류○○)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8. 9. 원처분청)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11. 6. 김○○)
6. 진단서 사본(1991. 7. 14. 고신의료원)
7. 소견서 사본(1991. 8. . 원처분청 자문의)
8. 진단서(1991. 10. 9. 고신의료원)
9. 특진 소견서(1992. 1. 17. 동강병원)
10.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중공업(주) 소속 기계보수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9. 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 안내이물, 2) 우안, 백내장, 3) 우안, 초자체 출혈”로 고신의료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7. 24. 치료 종결되었는바 고신의료원 담당 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최초 장해진단 소견서상 “우안시력 0.15(교정불능)” 이외의 특이소견이 없으나 1991. 10. 9.자 고신의료원 담당 주치의의 추가진단서상 “현재까지 경과관찰 중이며, 황반부 변성으로 현재 우안시력 0.02이며 교정 불가능함”의 소견이 있어 보다 정확한 장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처분청에 의뢰하여 동강병원에서 장해감정을 실시한 바 “현재 우안은 안전수지 상태이며 향후 우안의 시력회복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의 감정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우안이 “실명” 상태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8급 1호 “한 눈이 실명된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